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5월 26일

나. 발 의 자: 이성수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8일

라. 상정일자: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6. 20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생활환경국장 이영환)

가. 제안이유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및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,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및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개정사항 반영 (안 제1조~2조)
-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 정비(안 별표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#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및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,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및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#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는 조항을 개정하였고,
- 안 제2조에서는 가스사업 등의 종류를 특정하여 본 조례에 적용되는 사업을 명확히 하였으며,
- 안 별표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법령 중 일부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고, 그밖에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을 일부 정비하였음.

#### ○ 검토 결과

- 본 안건은 입법의 명확성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6. .

발 의 자 : 이성수, 우경란, 양송이  
· 이순우 의원(4인)

## 1. 제안이유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및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,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및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~2조)

나.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 정비(안 별표)

## 3. 개정안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,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5. 31.~ 6. 6.)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조제2항”을 “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제4조제1항 또는 제3항”을 “제4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가스사업 및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
2.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설치
3.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
4. 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 및 일반제조사업
5.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
6. 고압가스 판매소 및 고압가스 수입업소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【별표】

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(제3조 관련)

구분	허가기준
공통사항	「건축법」, 「학교보건법」, 「소방기본법」, 「주택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보건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.
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저장탱크는 지하에,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</li> <li>3. 저장설비·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·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1호가목1)가)의 2배로 한다.</li> <li>4. 「도로교통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. 다만,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.</li> </ol>
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설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저장설비(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)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5의 제1호가목1)가)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.</li> <li>3.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(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)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.</li> </ol>
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, 면적은 38㎡ 이상이어야 한다.</li> <li>2.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, 사무실은 18㎡ 이상이어야 한다</li> <li>3. 제1종 보호시설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</li> <li>4.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</li> <li>5. 용기보관실과 접하여 바닥면적이 23㎡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.</li> </ol>
고압가스 일반제조사업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독성가스가 아닐것</li> <li>2.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</li> </ol>
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기존업소의 냉동능력 범위에서 시설변경은 제외한다.</li> </ol>
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가연성,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</li> <li>2. 독성가스가 아닐 것. 다만 공공의 상·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.</li> </ol>
고압가스 판매소 및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압가스 용기보관실은 그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㎡ (액화가스는 3톤)를 넘는 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</li> </ol>

구분	허가기준
고압가스 수입업소	<p>거리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(별표4) 제1호가목1)가)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.</p> <p>2. 사무실 면적은 18㎡ 이상이어야 하며, 가연성가스·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 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, 각각의 면적은 20㎡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3.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, 사업소 부지는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</p> <p>4. 고압가스판매소의 경우에는 용기보관실과 접하여 23㎡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.</p> <p>5. 제1종 보호시설내에 설치하지 아니할것.</p>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제5항과 「<u>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</u>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가스사업 등”이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<u>제4조제1항 또는 제3항</u> 및 「<u>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</u>」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 「<u>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</u>」 제6조제3항----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 ---- <u>제4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② <u>제1항의 가스사업 및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</u></li> <li>2. <u>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설치</u></li> <li>3. <u>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</u></li> <li>4. <u>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 및 일반제조사업</u></li> </ol>

5.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  
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

6. 고압가스 판매소 및 고압가  
스 수입업소